익산시 정보공개 조례

[시행 2022.02.09] (일부개정) 2022.02.09 조례 제2264호

> 관리책임부서명 : 행정지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: 063-859-5156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익산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통한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07.11, 2022.02.09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07.11, 2018.12.28, 2022.02.09>

- 1. "공개대상기관"이라 함은 익산시(의회사무국을 포함하며, 이하 "시"라 한다),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(이하 '출자기관'이라 한다)을 말한다.
- 2. "청구인"이라 함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정보공개의 원칙) 공개대상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07.11>

제4조(시장의 책무) 익산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은 정보를 시민이 신속·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02.09> [제목개정 2022.02.09]

제5조(공개대상기관의 의무) ①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·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02.09>

②공개대상기관의장은 보유·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·비치하고,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02.09>

제6조(정보공개의 청구방법) ①청구인은 해당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2.09>

- 1. 청구인의 이름·생년월일·주소 및 연락처(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)
- 2.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(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<신설 2022.02.09>
- 3.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
- ②제1항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,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 <개정2012.07.11, 2022.02.09>

제7조(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) ①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, 주기,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이나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2.07.11, 2018.12.28, 2022.02.09>

- 1. 공개대상기관의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·결산 및 기금운영계획
- 2. 공개대상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내역
- 3.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
- 4. 시가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
- 5.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의 행정(이하 "시정"이라 한다)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(인구, 세대수, 통계연보 등)

②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2.07.11, 2022.02.09>

- 1.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
- 2. 사용료,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

- 3.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
- 4. 교량, 지하도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
- 5. 교량, 지하도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예산편성과 집행현황
- 6.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
- 7.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, 3천만원 이상의 구매·용역 발주 현황
- 8. 공사비 5백만원 이상의 공사, 구매·용역 수의계약 현황
- 9. 각종 시 행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개최 결과보고서
- 10.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
- 11.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<개정 2012.07.11>
- 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2.07.11, 2022.02.09>[제목개정 2022.02.09.]

제8조(공개방법) ①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. <개정 2012.07.11, 2019.06.28, 2022.02.09 >

- 1. 문서·도면·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- 2. 필름·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·복제물의 교부
- 3. 마이크로필름-슬라이드 등은 시청-열람 또는 사본-복제물의 교부
- 4. 전자적 형태로 보유·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·시청 또는 출력물의 교부
- 5. 전자적 형태로 보유·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.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·신청하게 하거나 사본·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.
- ②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·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. <개정 2012.07.11, 2022.02.09>
-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2.09>
- ④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,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과다한 경우에는 정본의 사본·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2.09>

제9조(비용의 부담)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, 그 부담하는 금액, 징수 절차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「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2.07.11, 2018.12.28, 2022.02.09>

제10조(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

- ② 심의회 위원은 위촉직 5명과 당연직 2명으로 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은 해당 집행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공개모집 할 수 있으며, 당연직은 기획행정국장, 건설국장이 된다. <개정 2006.12.11,2007.5.17, 2008.07.15, 2013.07.26, 2015.01.09, 2018.11.23, 2018.12.28, 2022.02.09>
-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06.12.11, 2022.02.09>
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2.28, 2019.06.28>
-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「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. <개정 2018.12.28,, 2020.1.8.>

제10조의2(정보공개책임관)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책임관을 둔다.

-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소관부서 국장으로 한다.
-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
- 1. 정보공개심의회 운영
- 2.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지원
- 3.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・훈련
- 4.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[본조신설 2012.07.11]

제11조(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2.07.11, 2022.02.09>

- 1.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, 공개범위,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
- 2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가. 공개대상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
- 나.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
- 다.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
- 라.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
- 3.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

제12조(운영) ①위원장은 심의회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

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의견청취)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,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개정 2012.07.11>

제14조(위원의 책무)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.

제15조(다른 제도와의 관계) ①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, 공고, 고시, 예고 또는 등본, 초본 그 밖에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2.07.11, 2022.02.09>

②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,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,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

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 <개정 2006.12.11 조례 제87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개정 2012.07.11 조례 제125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개정 2013.07.26 조례 제1333호> (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⑧ (생략)

⑨「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"기획행정국장"을 "안전행정국장"으로 한다.

⑩ ~ 18 (생략)

부칙 <개정 2015.01.09 조례 제1419호> (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(생 략)

②「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"전략산업국장"을 "문화산업국장"으로 한다.

③ ~ [38] (생략)

부칙 <제1806호, 2018.11.23> (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·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,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·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·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·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제3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~ (생 략)

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"안전행정국장,문화산업국장,건설교통국장"을 "기획행정국장, 경제관광국장, 건설국장"으로 한다.

~ (생 략)

부칙 <조례 제1827호, 2018.12.28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1872호, 2019.06.28> (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조례 제1948호, 2020.1.8.> (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.

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까지 생략

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5항 중 "「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"를 "「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"로 한다.

부터 134항까지 생략

제4조 및 제5조 생략

부 칙 <조례 제2264호, 2022.2.9.> (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전자 파일의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(종이출력물)・인화물・복제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○ 사본(종이출력물)
- A3 이상 300원
- 1장 초과마다 100원
- B4 이하 250원
- 1장 초과마다 50원
○ 전자파일(문서 · 도면 · 사진 등)의 복제
- 무료 ※ 매체비용은 별도
○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(문서 · 도면 · 사진 등)
-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
-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※ 매체비용은 별도
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 · 비디오자료)의 복제
- 1GB마다 8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